

---

## Policy and Law Report \_Vol.99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1. 8.17 ~ 8.22) -

August 23, 2021

법무법인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기획재정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b></li> </ul> <p>기획재정부는 「제6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주요 안건을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22년도 국유지 개발 활성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의 문턱을 대폭 낮춰,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다양한 개발사업 추진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간참여개발*」의 활성화를 위해 개발가능 국유재산의 범위를 5년 이상 미활용 일반재산에서 전체 일반재산·행정재산 등으로 확대</li> <li>- 국가출자 한도를 현행 30%에서 현물출자를 포함해 최대 50%까지 늘리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국유지개발목적회사(SPC)를 설립하고 개발사업 추진 ('11년 제도 도입)</li> <li>** 국유재산법령 개정 추진 ('21.下~)</li> </ul> </li> <li>- 국유재산법령 개정 前에 민간의 자본과 아이디어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국유지 장기 대부형 개발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계획 ('22년 중)</li> <li>- 현행 국유재산 위탁개발 사업지 중 2곳*의 일부 국유지를 민간사업자에게 50년까지 장기 대부하고, 업무시설·상업시설 등 민간의 창의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물 개발*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파 중앙전파관리소(복합개발), 수원 舊서울대 농대(토지위탁개발) 부지에 적용 검토</li> <li>** 송파 중앙전파관리소:공공청사, 창업지원, 클러스터지원(일반업무·상업) 등 복합 수원 舊서울대 농대:지식산업, 창업지원, 연구개발, 공공시설(공원·도로 등) 등 복합</li> </ul> </li> </ul> </li> <li>•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존 청·관사 복합개발*에 생활SOC를 추가하여 복합의 범위를 넓힌 선도사업 추진</li> </ul> <p>② 광역철도 민자사업 추진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 확정된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사업 중 선도사업으로 선정(8/17 발표)된 5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 우선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부산~양산~울산, ②대구~경북, ③광주~나주, ④대전~세종~충북, ⑤용문~홍천 등 5개 사업 (총 연장 222km, 7.6조원 규모)</li> </ul> </li> <li>• (사업 추진방식) 대규모 투자소요, 합리적 수준의 이용요금 책정필요 등을 감안, 이용자 사용료+정부 지급 시설임대료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혼합형 민자방식(BTO+BTL) 등 새로운 사업방식 적극 활용</li> </ul>	<p>2021-08-19</p>

부처	내용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사업)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 근접지 등 인근에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 주택, 문화·체육시설, MICE산업시설 등 공공성 수익성을 확보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최대한 활용</li> <li>• (신속한 사업 추진) 예비타당성 조사,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동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 병행</li> </ul> <p><b>③ '22년 재정성과목표관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다 거시적 전략적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현 시스템 대폭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정성과관리체계 개편, '20.2월)</li> <li>:성과목표관리(성과계획·보고서)는 '단위사업' → '프로그램' 단위로 상향, 성과평가는 '세부사업' 단위로 일원화</li> <li>- '22년 예산편성 시 제출하는 성과계획서부터는 '프로그램 성과목표관리'를 도입 계획</li> </ul> </li> </ul> <p><b>④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반기에 선정한 4개 사업군*의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도개선 및 지출 효율화 방안 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②다기화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조정, ③정책펀드 운영 효율화, ④농어업정책보험 운영 효율화</li> </ul> </li> <li>•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예정인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를 새롭게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화, ②다기화된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조정, ③정책펀드 운영 효율화, ④농어업정책보험 운영 효율화</li> </ul> </li> </ul>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b></li> </ul> <p>정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하고, 8월 내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b>①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 연장</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부칙 제11792호의 개정으로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li> <li>- 유효기간 동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매년 정원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청년고용 창출 의무 부과</li> </ul> <p><b>②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 등 근거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8조의5의 신설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한 기준을 갖춘 기업을 '청년 친화 강소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li> <li>- 이를 통해 '16년부터 도입된 청년 친화 강소기업 발굴을 활성화하여 근로조건과 성장 가능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으로의 청년 취업 촉진</li> </ul>	2021-08-17

부처	내용	일시
	<p>③ <b>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 확대 및 행정조사 요건 구체화</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 제8조의2의 개정으로 청년 직장체험 기회 제공의 주체를 국가 외에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li> <li>- 법 제18조제2항 개정으로 행정조사의 요건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행정조사 대상 국민의 권익 침해 가능성 최소화 등이 있음</li> </ul>	
국토 교통부	<p>• <b>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등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 발전 방안」 마련</b></p> <p>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 온 TF 회의 등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b>(중개보수)</b>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매매 0.5%, 임대 0.8%) 해소</li> <li>* 8억 거래시 : (현행) 매매 400만, 임대차 640만 (개편안) 매매 320만, 임대차 320만</li> </ul> <p>② <b>(중개서비스)</b> 중개사고에 대한 실질적인 소비자 보호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 보장(중개사협회 공제금)을 현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장한도 : (개인) 연 1억 → 연 2억, (법인) 연 2억 → 연 4억</li> <li>- 사고가 잦은 다가구주택 거래시 계약기간·보증금액 등 임차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도록 하여 분쟁 소지 최소화</li> </ul> <p>③ <b>(경쟁력 강화)</b> 시장 수요 등을 고려한 공인중개사 배출을 위해 상대평가제 도입 등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개사무소 당 공인중개사 인원수를 고려하여, 중개보조원 채용 인원 제한도 검토</li> </ul>	2021-08-20

##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행정 안전부	<p>• <b>「<u>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u>」(2022.2.18. 시행예정)</b></p> <p>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다 폭넓게 보호하고, 기술유통 행위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자료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한편, 하도급거래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를 입증하여야 하는 피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법원이 손해를 입힌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밀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기술자료의 정의규정에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비밀로 유지된’ 을 ‘비밀로 관리되는’ 으로 변경하여 <b>기술자료 인정요건을 완화함</b> (안 제2조 제15항)</li> <li>② <b>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b> (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li> <li>③ 손해배상소송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당사자에게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b>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함</b> (안 제35조의2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피해기업의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원은 이 법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의 증명이나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li> <li>2) 법원은 자료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그 자료로 증명하려는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때에는 그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료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높임</li> </ul> </li> <li>④ <b>법원의 비밀유지명령 관련 제도를 신설함</b> (안 제32조의3부터 제32조의5까지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원은 자료제출로 인한 영업비밀의 유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당사자가 보유한 영업비밀을 다른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소송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li> <li>2)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그 명령을 받은 자는 해당 영업비밀이 공개되더라도 당사자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에 비밀유</li> </ul> </li> </ul>	2021-08-1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3)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 당사자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를 통하여 그 열람 등의 신청절차를 밟은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즉시 소송기록의 열람 등의 제한을 신청했던 자에게 그 열람 등의 신청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함</p>	
고용노동부	<p>• 「<b>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b>」(2022.2.18 시행예정)</p> <p>최근 택배, 대리운전, 퀵서비스 등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하여 불특정 조직이나 개인에게 문제 해결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일명 ‘플랫폼 노동자’로 편입되는 인원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p> <p>그러나 ‘플랫폼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처우 등에 직면해 있으며, 특히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미흡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인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배달·운전 등의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추가하고,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배달·운전 등의 노무제공자들에 대한 공적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제95조의2제1항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근로복지사업 실시 근거로 조문을 수정함 (안 제95조의2제1항)</li> <li>② 현행법 제95조의2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배달·운전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휴게시설의 설치·운영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에 추가하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함 (안 제95조의2제2항)</li> <li>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휴게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비용부담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함 (안 제95조의2제4항)</li> <li>④ 휴게시설 운영 업무의 위탁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수탁 법인·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안 제9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이 있음</li> </ul>	2021-08-1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중소벤처 기업부	<p>• <b>「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 (2022.2.18 시행 예정)</p> <p>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기술자료의 비밀유지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수탁기업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를 배상하도록 하며, 해당 손해액의 인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은 비밀유지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함 (안 제21조의2 신설)</li> <li>② 기술유용행위를 위탁기업이 비밀로 관리되는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 부당하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구체화함 (안 제25조제2항)</li> <li>③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도입하되, 그 손해배상 한도액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액 산정 시 손해액 인정기준을 마련함(안 제40조의2제2항, 안 제40조의3 신설)</li> <li>④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수탁기업이 주장하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위탁기업이 부인하는 경우 위탁기업이 자기의 구체적 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수탁기업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함 (안 제40조의4 신설)</li> <li>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가 증거제출명령에 불응한 경우 해당 자료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자료의 기재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의5 신설)</li> <li>⑥ 제40조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안 제43조제2항 및 제3항)</li> </ol>	2021-08-17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식품 의약품 안전처</p>	<p>• <b>「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3.1.1. 시행예정)</b></p> <p>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음. 또한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p> <p>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p> <p>또한 최근 식품과 관련 없는 상표나 포장에 식품과 결합한 펀슈머(Funsumer)식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음. 그런데 이들 펀슈머 식품 중에서는 구두약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과 포장이 유사한 식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이 실제 생활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총리령으로 정하는 물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2호 신설,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다목, 제8조제1항제9호 신설)</p>	<p>2021-08-17</p>
<p>금융 위원회</p>	<p>• <b>「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2021.11.18 시행예정)</b></p> <p>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결제대행업체로 하여금 거래 대금결제 및 거래 취소 등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공개하도록 하고, 여신전문금융회사와 부가통신업자의 최대주주 등의 변경사실 보고기간을 그 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서 14일 이내의 기간으로 변경하며,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금융위원회의 인가·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신용카드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융기관 대주주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제6조의16 신설, 제19조의21제1항 변경, 제23조3의제11항제7호의5 신설)</p>	<p>2021-08-17</p>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환경부	<p>• <b>「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b></p> <p>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범위에 중점관리물질 취급현황을 추가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함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는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의 대상 화학물질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을 추가 (안 제2조)</li> <li>② 별표 1 및 별표 3의 화학물질 취급현황 공개 예시에 중점관리물질 반영</li> <li>③ 중점관리물질 공개에 대한 개정 규정은 2021년도에 실시하는 통계조사의 결과부터 적용 (안 부칙 제2조) 등이 있음</li> </ol> <p>※ 의견제시기간 :8/20(금)~9/9(목)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a>로 제출</p>	2021-08-20
환경부	<p>• <b>「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개정 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18174호, 2021.5.18. 공포, 2021.11.19. 시행)에 따라 유해 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폐업 여부, 수입 화학물질의 허가 또는 신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을 자료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화학물질안전원에 대한 법령 상 위임 범위를 확대하여 화학물질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세무관서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자료의 범위 구체화 (안 제13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li> <li>②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수수료의 결정을 검사 및 진단항목을 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안전원에 위임하도록 규정 (안 제22조 개정) 등이 있음</li> </ol> <p>※ 의견제시기간 :8/20(금)~9/29(수)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환경부(화학안전과)</a>로 제출</p>	2021-08-20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국토 교통부	<p>• <b>「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b></p> <p>해체공사의 양태에 따라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340호, 2021. 7. 27. 공포, 2021. 10. 28. 시행)됨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해체공사 전체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생애이력 정보체계 포함 항목 추가 (안 제2조제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해체공사 착공신고 관련 정보 및 현장점검 결과 등에 대한 사항을 추가</li> </ul> <p>② 감리원 배치기준 마련 (안 제22조제2항·제3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체허가 대상은 해체공사 전체 기간 동안 상주 감리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해체신고 대상 중에도 위험성이 높은 공법 등 적용시 상주 감리원 배치 의무화 등이 있음</li> </ul> <p>※ 의견제시기간 :8/17(화)~9/6(월)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a>로 제출</p>	2021-08-17
금융 위원회	<p>• <b>「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b></p> <p>주로 공모로 설정하고,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투자에 특화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신설하여 벤처기업 등의 자금조달 특성을 감안한 운용규제를 적용하되 90일 이내 상장을 의무화하고, 최소 설립규모를 두는 등 일반 공모집합투자기구와 별도의 설립·운용규제를 적용하고, ‘기업성장집합투자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등 혁신적 사업모델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발굴, 성장을 적극 지원하고 모험자본을 보다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정의 신설 (안 제229조제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비상장법인 등 ‘주된 투자대상기업’에 대해 증권취득, 금전대여 그밖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로 정함</li> </ul> <p>②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립요건 구체화 (안 제230조제3항, 제234의3제1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는 존속기간 5년 이상의 폐쇄형 집합투자기구로 설립하고, 90일 이내 상장하도록 하며, 50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 설립 규모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등 설립요건을 정함</li> </ul>	2021-08-18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③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운용규제 도입 (안 제234의3제3항·제4항, 제8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성 있는 기업을 선별·집중투자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투자특성을 고려하여 동일한 기업에 대한 투자한도, 동일한 기업이 발행한 지분증권의 취득한도 등 별도의 운용규제 도입근거를 도입함</li> </ul> <p>④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 인가요건 신설 (안 제234의제2항, 제9조제30항,제31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성장집합투자업자’의 인가단위를 신설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인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등이 있음</li> </ul> <p>※ 의견제시기간 :8/18(수)~8/27(금)까지 <a href="http://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a> 또는 <a href="#">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a>로 제출</p>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법제사법위원회</p>	<p>• <b>「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1인)」</b></p> <p>현행법은 이사의 임기를 회사의 규모와 무관하게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1인 주식회사나 소규모 주식회사는 주주가 거의 변경되지 않고, 이사가 변경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에도 3년마다 반복적으로 중임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소집하거나 중임 등기를 위한 법무사 비용 및 등기 비용 지급의 부담을 지고 있으며, 등기 시기를 놓쳐 과태료를 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p> <p>영국 회사법과 호주 회사법은 이사의 임기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며, 독일 주식법은 이사의 임기를 5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어도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의 임기를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소규모 주식회사 운영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안 제383조제2항 단서 신설)</p>	<p>2021-08-19</p>
<p>정무위원회</p>	<p>• <b>「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등 13인)」</b></p> <p>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경우 우편·카탈로그를 이용해 이루어지는 전통적인 ‘통신판매’ 개념을 기초로 규율체계가 설계되어 있어, 새롭게 변화된 거래환경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음</p> <p>이에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새로운 거래환경에 맞춰 현행 규율체계를 개편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 및 구제를 더욱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법체계 개편 및 용어 정비 (안 제2조)</li> <li>② 인접지역 거래에 대한 법적용범위 확대 (안 제3조제5항)</li> <li>③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법 적용범위 합리화 (안 제3조제6항)</li> <li>④ 역외적용 규정 신설 (안 제5조)</li> <li>⑤ 정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 (안 제16조 및 제32조)</li> <li>⑥ 맞춤형 광고에 관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고지의무 신설 (안 제18조 및 제32조)</li> <li>⑦ 외국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도입 (안 제19조)</li> </ul>	<p>2021-08-18</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⑧ 소비자 위해방지를 위한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조치의무 신설 (안 제20조 및 제30조)</li> <li>⑨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안 제24조)</li> <li>⑩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책임 현실화 (안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li> <li>⑪ 개인 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 (안 제31조)</li> <li>⑫ 동의를결제도 도입 (안 제62조 및 제63조)</li> <li>⑬ 임시중지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 (안 제64조)</li> <li>⑭ 금지·무효화되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범위 확대 (안 제66조) 등이 있음</li> </ul>	
	<p>• <b>「<u>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0인)</u>」</b></p> <p>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의 균형적인 상생을 도모하고자 대규모유통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구체화하여 금지하고, 납품업자나 매장임차인의 신고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p> <p>그러나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에 대해서도 현행법의 보호수단이 제공됨에 따라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 등과 거래하는 유통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그로 인해 중소기업 납품업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p> <p>이에 중소기업이 아닌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을 현행법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키고, 예외적인 필요성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동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중소기업 납품업자에 대한 보호에 집중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조제1항제1호)</p>	2021-08-18
	<p>• <b>「<u>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등 11인)</u>」</b></p> <p>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포착되고 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이와 같은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규제할 근거가 없음</p> <p>또한 가상자산사업에 대한 신고제 도입으로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실명거래 요건을 갖추어 2021년 9월 24일까지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나, 시중은행에서 위험성 부담 등을 이유로 가상자산사업자의 실명계좌 개설 요청에 신중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실명계좌를 개설하지 못한 다수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폐업 위기에 놓여 있으며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 우려되는 실정임</p>	2021-08-19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이에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시세조종행위를 금지하고, 시세조종행위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과 벌칙을 부여하며,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유예기간을 2022년 3월 24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2 · 제8조의3 ·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7113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및 제5조 등)</p>	
<p>기획재정위원회</p>	<p>• <b>「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등 10인)」</b></p> <p>「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은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 향상과 건전한 유통·판매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2년 제정되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가계의 의료비 지출 감소에 이바지했음</p> <p>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에서 국민의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p> <p>이에 현행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로서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하려는 것임 (안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신설 등)</p>	<p>2021-08-13</p>
<p>기획재정위원회</p>	<p>• <b>「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5인)」</b></p> <p>최근 국세청에서는 고액 국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자가 소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압류함으로써 체납된 국세를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는 등 보다 효율적인 성과를 이룩한 바 있음</p> <p>하지만 현행법에는 동산, 증권, 채권 등의 경우 체납된 국세를 추심하거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대하여 관련된 근거 규정들이 있지만, 최근 들어 자산으로 인정받고 있는 가상자산의 경우 이와 관련된 근거 규정이 없어 법규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p> <p>이에 국세 체납자의 추심이나 징수 등을 위한 압류자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납된 국세를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는 것임 (안 제31조, 제34조, 제48조, 제62조 및 제66조 등)</p>	<p>2021-08-17</p>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 <b>「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등 10인)」</b></p> <p>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은 주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음</p> <p>또한 환기구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미세먼지 허용기준(100<math>\mu\text{g}/\text{m}^3</math>)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별 사업장 별로 그 상황에 맞게 해당 내용을 협의하되 기준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만들고자 함 (안 제28조 및 제35조)</p> <p>또한,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예방적 징벌효과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한 실정임</p> <p>이에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종래의 서면경고 등 사전조치 없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안 제40조 및 제76조)</p>	2021-08-13
환경노동위원회	<p>• <b>「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수의원 등 10인)」</b></p> <p>현행법에 의하면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에 관하여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받은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p> <p>현행법상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방법으로서 위 변경인증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중요사항이라도 변경의 내용에 따라서는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어 변경인증 제도로 규제할 실질적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중요사항 외의 사항에 대한 변경이라도 인증제도의 목적상 일정한 행정적 관리·감독이 필요하기에, 동법 시행규칙에서 변경보고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에 의하면 변경보고를 한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p> <p>이로 인하여, 배출가스량 증가가 없는 변경이라도 변경보고를 누락할 경우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므로 형사 처벌 규정이 적용되어 위반행위의 실질과 제재 수단의 균형이 맞지 아니하고, 중요사항 외의 변경에 대해서는 법률에 근거가 없으므로 변경보고를 누락하더라도 행정적 제재가 불가능함. 또한, 법률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대해 배출가스량 증가를 불문하고 변경인증을 받을 것을 요하나 시행규칙에서 그 중 일부를 변경보고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법 체계상 논란의 소지가 있음</p>	2021-08-17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따라서 시행규칙상의 변경보고를 법으로 규정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함으로써, 의무 위반의 실질에 부합하고 비례의 원칙에 더 충실한 규제 체계를 구현하고 상·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종래에 법 시행규칙 제67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던 변경보고를 법률에 규정함 (안 제48조제3항)</li> <li>②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보고를 한 경우의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함 (안 제56조제1항제2호)</li> <li>③ 변경보고 제도를 법률에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시 배출가스량 증가없는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500만원, 중요사항 외의 변경의 경우에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함 (안 제9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3호의2)</li> <li>④ 현행법 제91조제4호에서 형사처벌 대상을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로 규정하므로, 변경보고 제도를 제48조제2항의 변경인증과 별도로 제48조제3항으로 신설함에 따라, 변경보고 누락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됨 등이 있음</li> </ul>	



###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원회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8.23(월) ~ 8.25(수)	제42차 아세안의회연맹(AIPA) 총회 - 의제 : 202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을 위한 디지털 포용성 분야 의회 협력 구축	화상회의
	8.27(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53호 발간	
국회도서관	8.23(월)	「팩트북」 제89호 발간 - 디지털 시대의 정당	
	8.23(월)	「최신정책정보:국내」 제88호 발간 - ‘메타버스와 지식재산’ 등	
	8.24(화)	「현안, 외국에선?」 제18호 발간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영국은 어떻게?	
	8.24(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70호 발간 - 빅테크기업 등 대규모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동향	
	8.26(목) 09:30	「제19차 AI와 국회포럼」 - ‘전 세계 법을 한번에?... 피스컬노트 팀 황(Tim Hwang) 특별강연	ZOOM
예산정책처	주중	「저출산 대응 사업 분석·평가」 발간 - 저출산 대책의 설계와 집행 과정을 분석 평가하여 개선과제 도출	
	주중	「2021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사례」 발간 - 법안 비용추계제도 전반에 대한 소개 및 기(既) 발의(2020.6월~ 2021.3월)된 주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 사례 제시	
	주중	「NABO 경제·산업동향&이슈」 8월호 발간 - 외국인 주식투자가 국내 주가 및 주가변동성에 미치는 영향 등 - 디스플레이 산업의 수출 변동요인 및 경제적 효과 분석	
입법조사처	8.24(화) 10:00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전망과 남북국회회담 추진환경 분석 연속간담회 - 코로나19 대유행 종식 이후 남북관계	온라인
	주중	「이슈와 논점」 발간 - 규제영향분석과 입법과정」	
	주중	「NARS 현안분석」 발간 - 재정 조기집행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 [별첨1] 제390회국회(8월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운영위	8/23(월) 10:00	전체회의	법안의결·업무보고 등
법사위	8/23(월) 15:00	제1법안심사소위	고유법 심사
	8/24(화) 10:00	전체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타위법 심사 등
정무위	8/27(금) 10:00	전체회의	금융위원회 위원장후보자(고승범) 인사청문회 등
기재위	8/25(수) 10:00	전체회의	법안 심사
외통위	8/23(월) 14:00	전체회의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안
국방위	8/24(화) 10:00	법률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8/25(수) 10:00	법률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행안위	8/23(월) 14:00	예결산소위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4(화) 10:00	예결산소위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5(수) 11:00	전체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7(금) 10:00	제1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8/27(금) 10:00	제2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농해수위	8/24(화) 10:00	전체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등
	8/26(목) 10:00	예결산소위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7(금) 10:00	전체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산자위	8/24(화) 10:00	전체회의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대리 인정에 대한 공청위 개최의 건 및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5(수) 10:00	예결산소위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복지위	8/23(월) 10:00	제1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8/23(월) 14:00	전체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상정 등
	8/24(화) 10:30	전체회의	간호법 제정에 관한 공청회
	8/24(화) 14:00	예결산소위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5(수) 10:00	전체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정보위	8/24(화) 15:00	전체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상정 등
	8/26(목) 10:00	예결산소위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8/27(금) 10:00	법안심사소위	법안 심사
	8/27(금) 10:30	전체회의	2020 회계연도 결산 심사 및 법안심사 등

##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23(월) 14:00	시각장애인의 필요를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김예지, 김민석, 이종성 의원실	ZOOM 화상회의
8/23(월) 14:00	(2022 사회대전환을 위한) 충분한 기본소득 실현 국회 토론회	용혜인 의원실, 경기연구원 외	유튜브 생중계
8/24(화) 10:00	경기도 재산비례 벌금·범칙금 도입 국회토론회	강득구 의원실, 경기도 외	글래드호텔 블룸A홀
8/24(화) 14:00	문재인 정부 생명안전 정책 4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우원식, 이탄희, 오영환 의원실 외	유튜브 생중계
8/24(화) 14:00	OTT 환경에서 영상콘텐츠의 확장과 육성 방향	임오경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8/24(화) 16:00	탈플라스틱 연속 간담회	강은미 의원실, 정의당 녹색정의위원회	유튜브 생중계
8/25(수) 14:00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성과와 과제 - 중증질환자 약제 보장성 개선을 중심으로	강선우 의원실	유튜브 생중계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8/17(화) 14:00	<a href="#">자율주행 도입에 따라 사회와 산업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a>	박상혁, 송언석 의원실, 국토교통부	유튜브 생중계
8/19(목) 14:00	<a href="#">동물보호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 동물 보호·복지 정책의 수립과 시행</a>	박홍근 의원실, 농림축산식품부 외	유튜브 생중계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파트너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파트너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선임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소속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소속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서예지** | 소속변호사 T. 02-316-1787 E. yjiseo@shinkim.com
- **문응필** | 소속변호사 T. 02-316-4047 E. epmoon@shinkim.com
- **최유리** | 소속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소속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소속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박희훈** | 소속변호사 T. 02-316-7917 E. hhpark@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